

1.약관명: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 : 가계용)

2.시행일: 2024.12.02.

3.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미적용

주택도시기금대출 약정서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 1조 거래조건</p> <p>대출이자율 신생아특례버팀목전세자금대출</p> <p>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p> <p>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p> <p>※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월세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회차별 실행금액 중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 하고,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실행금액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p>	<p>제 1조 거래조건</p> <p>대출이자율 신생아특례버팀목전세자금대출</p> <p>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단, 가장 작은 값이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별 하한금리 값을 적용.</p> <p>* 소득구간별 하한금리</p> <table border="1"><thead><tr><th>연소득</th><th>하한금리</th></tr></thead><tbody><tr><td>1.3억원 이하</td><td>연소득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td></tr><tr><td>1.3억원 초과</td><td>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td></tr></tbody></table> <p>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p> <p>※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월세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회차별 실행금액 중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실행금액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p>	연소득	하한금리	1.3억원 이하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1.3억원 초과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	<p>신생아 특례대출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금리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p> <p>상품명 수정</p>
연소득	하한금리							
1.3억원 이하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1.3억원 초과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제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p> <p>9.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가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p>	<p>신생아 특례대출 기금중복대출 검증 대상자 확대</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7조 무주택 등에 대한 특약사항</p> <p>①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결혼예정배우자 포함)(이하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이하 “미성년 형제·자매”)의 무주택,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p> <p>②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미성년 형제·자매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input type="checkbox"/> 생애최초 <input type="checkbox"/> 신청일로부터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p> <p>③ 제2항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하 경우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p>	<p>제7조 무주택 등에 대한 특약사항</p> <p>①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민법상 미성년형제·자매(이하 “미성년 형제·자매”)의 무주택,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 이용에 동의합니다. 단, 혼인신고 없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의 무주택, 기금중복대출여부 또는 소득 확인을 위하여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② 본인 및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생애최초 <input type="checkbox"/> 신청일로부터 5년이상 <input type="checkbox"/>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p> <p>③ 제2항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본인 또는 세대원, 미성년 형제·자매, 신생아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p>	<p>신생아 특례대출 추가주택 취득 및 기금중복대출 검증 대상자 확대에 따른 내용 반영</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10조 기한연장</p> <p>② 전세자금(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대환 포함),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은 제외)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를 상환하기로 하되 10%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0.2%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3회차 연장 시부터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기준으로금리를재산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p>	<p>제10조 기한연장</p> <p>② 전세자금(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대환 포함), 전세 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은 제외) 기한연장시에는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를 상환하기로 하되 10%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0.2%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또한, 3회차 연장 시부터 기한연장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한연장 시점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p>	<p>상품명 수정</p>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제13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고객 고지 사항-</p> <p>2. 위 약정서 제6조 및 제7조, 기타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상실 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p>	<p>제13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p> <p>①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5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p> <p>② 전세사기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p> <p>③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을 받은 후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됨이 확인되는 즉시 본 대출금액 전부를 상환하거나 대출금리에 3%p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p> <p>-고객 고지 사항-</p> <p>2. 위 약정서 제6조 및 제7조, 제13조, 기타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상실 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p>	<p>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p>